

## 朝鮮時代 造景制度의 法的 側面에 관한 研究

李 暲 植

密陽專門大學 造景科

### A Study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rchitecture of Chosun-Dynasty

Lee, Yoo-Jick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Miryang National Junior College

#### ABSTRACT

This study is executed to investigat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osun-Dynasty. To pursuit this purpose, All the Codes established in Chosun-Dynasty were examined thoroughly.

In Chosun-Dynasty,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ctivities were mainly carried out by San-Tack-Sa, Chang-Won-Seo i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Sa-Po-Seo in the Ministry of Finance. Stipulated in the text, in the early part of Dynasty, Chang-Won-Seo was composed of 63 personnels and Sa-Po-Seo was about 160 personnels involving servants as well as high-ranked officials. But gradually, the size and importance of organizations were reduced.

These three organizations were managing the traditional gardens. But the meaning of traditional garden which was expressed in the Codes was relation to the practical aspect, as if planting flowers or fruit trees and breeding animals.

The provisions dealing with landscape architectural activities were very poor. Only the provisions concerning with planting and managing the trees of practical use, governing the silkworm rearing areas and prohibition of timbering and quarrying were stipulated.

#### I. 序 論

현재 우리 나라 傳統造景分野의 연구는 전혀 저 내려오는 庭園의 物理的 遺構를 대상으로 空間의 特性을 파악하거나, 또는 造景要素 및 設計技法 등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傳統造景의 特性을 고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物理

的 形態에 대한 直接的인 탐구뿐만 아니라 傳統造景을 形成시킨 2차적 要因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傳統庭園을 하나의 文化的 活動의 所産이라 보고 이러한 傳統造景文化를 형성시킨 2차적 要因들에 관하여 깊이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傳統造景의 根源的 實體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傳統造景文化를 형성한 여러 要因들 중에서 法的, 制度的 측면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造景活動의 성격 및 기능 등이 法的, 制度的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듯이 傳統造景時代에 있어서도 造景官制와 關係 法은 그 시대에 요구되었던 造景活動의 범위 및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制度史 研究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특히 朝鮮時代는 최초로 완전한 형태의 成文法을 가지고 이를 그 시대의 사회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수정 보완하여 왔으므로 朝鮮時代의 法典은 造景活動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朝鮮時代 造景制度史를 연구하는데 있어 時空間의 폭이 넓고 深度있는 일차적 자료라 할 수 있다.

制度史의으로 볼때 高麗時代에는 造景關聯機關으로 內園署가 있었으며 朝鮮時代에 들어 와서는 東山色, 上林園, 掌苑署 등의 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機關을 비롯한 造景制度 전반에 대한 體系의이고 持續的인 연구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朝鮮時代 初부터 末까지 간행된 法典을 대상으로 文獻研究를 통하여 朝鮮時代 行政體系 중에서 造景을 담당한 國家機關의 특징과 그 구성을 살펴보고, 法條文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機構의 역할 및 기능을 고찰하며, 아울러 造景制度의 史的인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朝鮮時代 造景制度의 法的 側面을 고찰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 II. 研究의 範圍

전체 朝鮮時代를 통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오늘날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法典은 《經國大典》이며 《經國大典》 이후의 法典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經國大典》의 修正 補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經國大典》은 《經濟六典》중의 國基가 되는 규정을 ‘祖宗의 成憲’이라 하여 이를 변경함이 없이 繼受하였고 이와 같은

法典편찬의 태도는 朝鮮時代 말까지 堅持되었다. 1) 《經國大典》의 편찬은 朝鮮時代 法制史에 있어서 形式的으로나 內容的으로 매우 커다란 意義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편의상 《經國大典》 以前의 法典, 《經國大典》, 《經國大典》以後의 法典 등 朝鮮時代의 法典을 크게 세 範疇로 나누어 造景制度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範圍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또 한가지 사항은 傳統造景의 活動範圍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現代造景과 傳統造景은 設計方式과 理念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sup>2)</sup>에 造景의 領域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과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여러 京官職 中에는 山澤司, 繕工監, 觀象監, 修城禁火司, 掌苑署 및 司圃署 등의 기관이 傳統造景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機關으로 보인다. (<表 1>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傳統造景의 觀點을 《傳統庭園》으로 국한하였으며, 연구의 範圍를 ‘傳統庭園의 造營 및 管理’에 두고 관련 文獻資料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庭園의 傳統的 形態와 관련된 한

[表 1] 《經國大典》의 官制중 어느 정도 傳統造景과 관련있다고 보이는 機構

所屬	機關	役 割	位階
工曹	山澤司	山澤, 津梁, 苑園, 炭, 木材, 石材, 舟車, 筆墨, 水鐵, 漆器 등에 관한 사무	工曹의 屬司
工曹	繕工監	土木, 營繕 등에 관한 일	正三品衙門
禮曹	觀象監	天文, 地理, 曆數, 占算, 測候, 刻漏 등에 관한 일	正三品衙門
工曹	修城禁火司	宮城, 都城의 修築 및 官闕, 官衙의 건물, 坊里 각 戶의 消防 등에 관한 일	正四品衙門
工曹	掌苑署	苑園, 花草와 果物 등의 管理	正六品衙門
戶曹	司圃署	園圃와 蔬菜에 관한 일	正六品衙門

註 1) 李熙鳳 (1970) “韓國法制史”: 154-155.

註 2) 黃琪源 (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56.

자어인<sup>3)</sup> 園, 苑, 圃, 圃, 庭 등<sup>4)</sup>과 관련된 사항을 分掌하고 있는 山澤司, 掌苑署, 司圃署가 보다 '傳統庭園의 造營과 管理'라는 觀點에 近접한 機關으로 판단하였다.

### Ⅲ. 朝鮮時代 法典의 編纂

朝鮮時代에는 開國 初부터 王權 및 새로운 國家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法典의 편찬을 꾸준하게 추진하였다. 朝鮮時代 法典의 始原的 母體는 太祖 3년(1394)에 鄭道傳이 高麗 末 政體의 문란을 개혁하고 新王朝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편찬한 《朝鮮經國典》<sup>5)</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저술로써 法的 效力을 지니지 못한 한계성을 가졌지만, 中國의 周나라 이래의 六官 制度 체제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편찬되는 여타 法典들에서 보이는 六典의 構造의 기틀이 되었다.

朝鮮時代 최초의 官撰法典은 趙浚 등이 高麗 末 부터 당시까지 10여년간의 王의 指示와 規例들을 모아 편찬하여 太祖 6년(1397)에 공포 시행한 《經濟六典》이며 이것은 朝鮮時代 최초의 통일 成文法典으로써 일종의 受教集의 성격을 띠었다. 《經濟六典》은 내용상의 상호모순 및 누락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새로운 法令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15세기 중엽 世宗년간에 이르기 까지 네번의 수정과 보충작업이 진행되어 〈元典〉, 〈續典〉, 〈謄錄〉 등의 修正補充本이 출간되었다.

그 뒤에도 《經濟六典》의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며 世祖朝에 이르러서는 그간의 모든 法典과 受教 및 條例를 검토 집대성하여 永世不動의 法典編纂에 착수하여 《經國大典》이란 이름으로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丙戌年

大典〉이며 戶典과 刑典만이 시행되어 法的 效力을 발생하였다. 睿宗 원년(1469)에 《經國大典》의 첫 수정본인 〈己丑年 大典〉이 편찬되었으며 이는 六典體制가 완비된 統一法典으로 效力을 가진 최초의 《經國大典》이다. 그 뒤 成宗 2년(1471)의 〈辛卯大典〉, 成宗 5년(1474)의 〈甲午大典〉 등의 수정본만을 거쳐 최종 교정본이 편찬되어 成宗 16년 乙巳年(1485) 정월 초하루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建國이래 부단히 수찬을 거듭한 法典의 편찬은 확정되었으며 《經國大典》은 朝鮮時代 全期를 통하여 基本法의 구실을 하였다.

《經國大典》 편찬이후 國難이나 權力鬭爭 등으로 인하여 受教 또는 條例 등이 남발되었는데 이와 같이 남발된 법은 法體系의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政局을 혼미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정리를 위하여 《大典續錄》(成宗 22년), 《大典後續錄》(中宗 38년), 《受教輯錄》(肅宗 24년) 및 《典錄通考》(肅宗 32년) 등과 같은 일련의 法典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肅宗과 英祖朝에는 당쟁의 심화로 인하여 新法이 남발되었는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英祖 22년(1746)에 《續大典》을 刊布하여 그간의 모든 法典을 實效케 하였다. 이에 《經國大典》과 《續大典》이 병존 시행되었으나 두 法典의 併用은 불편하므로 正祖는 두 法典의 全條文 및 그 후의 受教를 선택하고 동일성질의 조문을 분류 정리하여 동 9년(1785)에 《大典通編》을 편찬 간포 하였다. 그후 朝鮮 末期에 高宗이 등극하자 大院君은 다시 《大典通編》 이후의 受教 등을 증보하여 高宗 2년(1865)에 《大典會通》을 選修 刊布하였는데 이것이 朝鮮時代 의 마지막 東洋式 法典의 편찬이다.

《經濟六典》, 《續六典》 및 이들의 수정본과

註 3) 俞炳林, 黃琪源, 朴鐘和 (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 : 15-18.

註 4) 이밖에 傳統庭園과 관련이 있는 한자어로서 '掖'이 있는데, (岡大路 (1988) 中國宮苑園林史考 : 9-10.) 조선시대에는 '掖庭署'라는 기관이 존재하였다. 掖庭署는 왕의 侍衛, 陪從, 傳謁 및 闕門의 自물쇠, 宮闕 內庭의 鋪設, 각종 의식대의 香案, 表案, 寶案 등의 설치와 같은 일을 전담한 內侍들의 雜廡이다. 掖庭署라는 관청명은 傳統造景의 대상중에 하나인 '掖庭'이라는 宮闕의 특정 공간을 담당한 機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관 업무가 正職이 아닌 궁궐이나 왕실의 雜務를 처리한다는 比喩的인 의미내지 主業務遂行 場所와 관련하여 '掖'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註 5) 鄭道傳, 三峰集, 卷 13, 14.

[表 2] 朝鮮時代의 法典編纂 過程

法典名	年代	特徵
朝鮮經國典	太祖 3년 1394	鄭道傳 개인의 著述
經濟六典	太祖 6년 1397	朝鮮時代 최초의 成文法典
經濟六典元集詳節	太宗 13년 1413	經濟六典의 수정본. <元六典>
經濟六典續集詳節	太宗 13년 1413	經濟六典의 수정본. <續六典>
新續六典	世宗 11년 1429	元典, 續典, 騰錄의 형태를 지님
新撰經濟續六典	世宗 15년 1433	新續六典의 불비 결함 보정
經國大典(丙戌大典)	世祖 12년 1466	최초의 經國大典, 戶典과 刑典만 시행됨
· (己丑大典)	睿宗 원년 1469	丙戌大典의 수정 보완. 六典體制로 완비
· (辛卯大典)	成宗 2년 1471	己丑大典의 수정 보완
· (甲午大典)	成宗 5년 1474	辛卯大典의 증보 수정
經國大典(乙巳大典)	成宗 16년 1485	최종적 經國大典. 현재까지 전해짐
經國大典續錄	成宗 22년 1491	經國大典의 보충
大典後續錄	中宗 38년 1543	經國大典의 보충
經國大典註解	明宗 10년 1555	經國大典의 註解書
受教輯錄	肅宗 24년 1698	大典後續錄 이후의 敎令 彙集
典錄通考	肅宗 32년 1706	續錄, 後續錄, 受教輯錄의 보완정리
受教新補, 受教輯錄	英祖 15년 1739	肅宗朝 受教輯錄의 수보판
續大典	英祖 22년 1746	大典의 보충 개편
大典通編	正祖 9년 1785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合編
典律通補	正祖 9년 1785	大典의 재개편
萬機要覽	純祖 8년 1808	國家財政管理의 法的 規制
大典會通	高宗 2년 1865	王權의 絕對化를 위한 大典改編
六典條例	高宗 5년 1868	舊來 朝鮮時代 法的 宗인
法規類纂	高宗 1896	日帝侵略에 의한 개혁
刑法大典	高宗 1904	日帝侵略에 의한 개혁
韓國法典	純宗 1909	日帝侵略에 따른 法的 植民地의 近代化

《經國大典》의 乙巳大典 이전의 法典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經國大典》(乙巳大典) 이전의 법은 實錄을 중심으로 法條文을 推論하였으며<sup>6)</sup> 《經國大典》이후의 法典으로는 《經國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教輯錄》, 《典錄通考》,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을 참고하였다.

註 6)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 田鳳德 (1989) 經濟六典拾遺, 참조  
 註 7) 李熙鳳 (1970) “韓國法制史” : 153.  
 註 8) 李熙鳳 (1964) “李朝時代의 行政機構의 大綱과 그 特徵” : 9.  
 註 9) 宮中の 음식을 만드는 官署.

#### IV. 朝鮮時代 造景關聯 機構의 官制 및 機能

朝鮮時代의 官制는 開國初에는 數次의 변동이 있었으나 世宗朝 이후에는 《經國大典》의 官制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太祖는 官制를 개혁할 겨를이 없어 高麗朝의 官制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2대 定宗朝에는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改置하는 일부개혁을 단행하였고, 3대 太宗朝에는 官制의 일대개혁을 실시하여 議政府의 기능을 강화하고 行政分野를 분류하여 六曹를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議政府를 정점으로 하고 六曹를 기축으로 하는 朝鮮時代 中央官制의 기본이 마련되었으며 4대 世宗朝에 이르러 六曹가 議政府로 부터 분리되어 그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朝鮮時代의 官制는 그 原理나 組織이 高麗官制와 다를바 없고 官職名도 거의 답습하였다.<sup>7)</sup> 따라서 朝鮮時代 造景機關의 官制 또한 高麗時代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것으로 보인다.

한편 議政府를 정점으로하고 그 밑에 六曹를 두어 각각의 사무를 管掌하는 체제에 있어서 行政의 각 部인 六曹는 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曹내에 司(오늘날의 行政 각 部의 局에 해당)를 두어 소정의 사무를 分掌하였으며 또한 그 밑에 다수의 官衙(오늘날의 官廳에 해당)를 下級官廳으로 갖고 있어 指揮監督하였다.<sup>8)</sup>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朝鮮時代 造景關聯 機構의 官制와 그 構成을 앞에서 살펴본 法典들을 기초로하여 고찰하였다.

##### 1. 高麗時代의 造景官制 및 機能

高麗時代에는 內園署를 두어 여러 園苑을 管掌하였는데 文宗은 內園署에 從7品 令 2명과 從8品 丞 2명을 두었으며 吏屬으로써 史 4명, 記官 2명, 算士 1명을 두었다. 그러나 忠烈王 34년 (1308)에 內園署를 司膳署<sup>9)</sup>의 管轄로 바꾸고

丞의 수를 4명으로 늘렸다.<sup>10)</sup>

2. 《經國大典》 以前の 造景官制 및 機能

太祖는 1392년에 開國하자 바로 文武百官의 制度를 정하였는데 高麗時代의 官制를 많이 답습하였으나 造景關聯 機構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은 없다.<sup>11)</sup> 한편 私的인 저술이기는 하지만 鄭道傳의 《朝鮮經國典》에도 造景官制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sup>12)</sup> 그러나 太祖 3년(1394)에 東山色을 上林園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實錄에 보이는데<sup>13)</sup> 上林園은 掌苑署의 전신으로써<sup>14)</sup> 이 기록으로 보아 上林園의 설치년대는 太祖 元年(1392)부터 3년(1394) 사이로 추정된다. 上林園의 官制는 자세하지 않지만 世宗 5년(1423)의 기록에 의하면 上林園에는 提調<sup>15)</sup> 2명과 實安副提調<sup>16)</sup> 1명이 배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sup>17)</sup> 이로 말미암아 上林園은 正三品衙門 이하의 官司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世宗 27년(1445)에 上林園의 下級職의 增員이 이루어 지는데,<sup>18)</sup> 이를 통해 上林園의 職名 및 構成의 일부를 알 수 있으나 각각의 職務는 알 수 없다.

[表 3] 世宗27년(1445) 上林園의 增員

(單位 : 名)

	司直	副司直	司正	副司正	給事	副給事
變更前	4	4	8	12	12	16
變更後	6	6	12	20	35	35

한편, 《續六典》의 條文으로 추정되는<sup>19)</sup> 太宗 實錄 5년(1405) 3월 丙申條에는 六曹의 職務 및 構成과 각 曹에 소속된 司의 종류 및 기능 그리고 소속 下級官廳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工曹는 山澤, 工匠, 土木, 營繕, 屯田, 鹽場, 陶冶 등에 관한 政事를 맡으며 營造司, 攻治司, 山澤司 등 세 개의 屬司를 둔다고 되어 있고(〈表 4〉참조), 工曹에 掌苑署의 전신인 上林園과 司圃署의 전신인 沈藏庫가 소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sup>20)</sup>

이후 上林園과 沈藏庫는 世祖12년(1466)에 각각 掌苑署와 司圃署로 개칭되고 掌苑 1명과 司圃 1명이 배속<sup>21)</sup> 되었으나 上林園과 沈藏庫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이러한 中央官制는 《經國大典》의 官制와 거의 유사한데 이 조문을 통해 《經國大典》 이전부터 工曹

註 10) 『內園署 掌諸園苑 文宗 置令二人 秩從七品 丞二人 從八品, 忠烈王三十四年 爲司膳署所轄 增丞 爲四人. 吏屬 文宗 置史四人 記官二人 算士一人』《高麗史》 志 卷第三十一 百官二

註 11) 《太祖實錄》太祖 元年 7月 丁未 條

註 12) 《三峰集》卷13 〈朝鮮經國典〉 上 治典 官制 條.

註 13) 『... 改東山色 爲上林園.』《太祖實錄》太祖 3年 7月 戊申條.

註 14) 上林園은 薦新, 進上, 使客支持 등의 수요를 위한 각종 果物(紅柿, 木瓜, 石榴, 生梨, 柚子, 柑 등)을 관장하였고 諸司의 果物을 모두 관장하였으며 배와 같은 과수는 栽植하기도 하였다. (韓治勸 외 4인(1990b) : 118-119.)

註 15) 提調는 ‘제조’ 또는 ‘제주’라고 읽으며, 朝鮮時代 80여개의 中央官制 중에서 그 首班의 品階가 왕에게 直屬될 수 없는 群小機關(正三品衙門 이하)에는 사무책임자 위에 반드시 堂上官을 두어 兼職함으로써 각 機關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提調의 任務는 첫째, 官吏들의 勤慢을 항상 살피고 그 成績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둘째, 教育 訓練機關의 提調는 官員과 生徒의 講學 및 取才를 擔當하였으며, 셋째, 該當官衙의 運營을 책임졌다. (李光麟(1967) : 69-93.)

註 16) 當然職 副提調를 가리킨다. 知申事 1명이 上林園의 當然職 副提調가 되었다.

註 17) 《世宗實錄》世宗 5年 3月 乙巳 條.

註 18) 《世宗實錄》世宗 27年 7月

註 19) 田鳳德(1989) : 163-165.

註 20) 『工曹 掌山澤 工匠 土木 營繕 屯田 鹽場 陶冶等事. 其屬有三 一曰營造司 二曰攻治司 三曰山澤司. 營造司掌宮室 城池 公廡 屋宇 土木 工役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攻治司掌百工 制作 繕治 陶鑄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山澤司掌山澤 津梁 苑囿 種植 草木 取伐 柴炭 木石 街巷 堤堰 船楫 漕運 碓磑 屯田 漁鹽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工曹所屬 沈藏庫, 上林園...』《太宗實錄》太宗 5年 3月 丙申 條.

註 21) 『...沈藏庫改稱司圃署 置司圃一 上林園改稱掌苑署 置掌苑一...』《世祖實錄》世祖 12年 1月 戊午 條.

[表 4] 工曹에 所屬된 各 司의 機能

屬司	機 能	官 員
營造司	宮室, 城池, 官公署의 廳舍, 家屋, 土木工事등의 일 담당	正郎 1명 佐郎 1명
攻治司	百工, 制作, 繕治, 陶鑄 등의 일 담당	正郎 1명 佐郎 1명
山澤司	山林, 沼澤, 나루터, 橋梁, 苑圃, 種植, 草木採取, 炭, 木材, 石材, 街巷, 堤防, 船舶漕運, 碓硨, 屯田, 漁鹽 등의 일 담당	正郎 1명 佐郎 1명

의 山澤司와 工曹 소속의 沈藏庫, 上林園 등에서 傳統造景과 관련된 일을 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經國大典》의 造景官制 및 機能

《經國大典》에 규정된 造景關聯 官制는 太宗 5년의 官制 및 世祖 12년의 변경된 명칭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司圃署가 工曹 소속에서 戶曹의 屬衙門으로 변경되어 기록되어 있다.

(1) 工曹

工曹의 기능과 屬司의 구성 및 기능은 전반적으로 《經國大典》 이전과 대동소이하다. 山澤司에서 苑圃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經國大典》에서 언급되는 苑圃의 의미는 果園 및 宮闕의 庭園을 의미하는 것이다. 明宗 10년(1555)에 간행된 《經國大典註解》에 의하면 苑을 禽獸를 기르는 곳으로, 圃를 담장이 있는 곳을 뜻한다고 보았으며<sup>22)</sup> 따라서 苑圃라함은 王의 遊樂이나 休息을 위한 場所라기 보다는 그 안에 과일나무

를 심어 과일을 進上하거나 말, 사슴, 노루 등을 놓아 길러 祭祀와 講武의 목적으로 사용하는<sup>23)</sup> 보나 實用的인 意味가 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掌苑署의 果園은 官員이 나누어 맡아 해마다 果木을 심거나 접붙여 그 그루수를 장부에 기록하여 工曹에 보고하였고, 工曹에서는 掌苑署의 果園을 감독하여 이를 잘 간수하지 못한 官吏를 論罪하였으며 또한 植木이나 接木을 하는 者가 부주의 하여 果園의 나무를 枯死하게한 경우 그 다소에 따라 처벌하였다. 아울러 각 司內에 있는 果木의 株數를 헤아려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모두 看守하는 機能을 하였다.<sup>24)</sup>

《經國大典》에는 工曹에 속한 構成 人員은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表 5] 참조), 庭園만을 전담한 職級이나 人員은 자세하지 않다.

(2) 掌苑署

掌苑署는 苑圃 및 花草와 果物 등의 관리를 맡았던 工曹所屬 正六品衙門기관으로써 北部 鎭長坊 成三問의 舊宅에 廳舍가 있었다.<sup>25)</sup> ([圖 1] 참조) 掌苑署의 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5] 참조).

① 正職 : 正職으로 提調 1명과 別提 3명을 두었으며<sup>26)</sup> 官司의 長은 正6품 掌苑이었다. 따라서 掌苑署가 正三品 이상의 堂上官이 首長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正六品衙門의 조직이기 때문에 提調를 두어 掌苑署를 겸직하게 하였다. 掌苑署를 통괄한 提調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正2品인 工曹判書 일것으로 판단되며 提調는 掌苑署의 모든 물품을 出納하였다.<sup>27)</sup>

掌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世祖 12년(1466) 上林園이 掌苑署로 개편될때 부터 생긴 掌苑署의 首班직책이다.

註 22) 『苑所以養禽獸 有牆曰圃 古謂之園 漢謂之苑.』《經國大典註解》後集 註解上(史典).

註 23) 《世祖實錄》世祖 3年 10月 丁未 條.

註 24) 『掌苑署各處果園 官員分掌 每年果木或栽或接 其株數置簿. 移文本曹 本曹擲奸 不能檢察官吏論罪. 栽接人 不用心以致枯損者 隨其多少論罪. 各司司內果木 計株置簿 本曹并考察.』《工典》栽植 條 註 및 細註.

註 25) 民族文化推進會(1969) 東國輿地備攷,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 226. ; 柳本藝, 漢京識略 : 155. 참조

註 26) 『掌苑園 花果 提調一員 別提一員...』《史典》京官職 掌苑署 條.

註 27) 《凡物 本曹官外 ...掌苑署 提調出納...》《戶典》支供 條.

② 雜職 : 正職과 아울러 掌苑署에는 雜職<sup>28)</sup>으로서 別監 20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遞兒職<sup>29)</sup>이었다.<sup>30)</sup> 일반적으로 別監은 闕內各差備<sup>31)</sup>의 한 部類로써 闕內의 雜役に 동원된 奴子를 지칭한다. 掌苑署 소속의 別監은 苑內의 花果, 禽獸飼養에 따르는 잡무에 종사하는 技術者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각기 소정의 雜職에 차임되었다. 雜職의 품계는 從6품 慎花 1명, 從7품 慎果 1명, 正8품 慎禽 1명, 從8품 副慎禽 1명, 正9품 慎獸 3명, 從9품 副慎獸 3명 등이었는데, 慎花는 苑內의 花草栽植 등의 일을 맡았으며 慎果는 果物에 관련된 일을 맡았고 慎禽과 副慎禽은 苑內

의 鳥類를 飼養하는 일을 맡았으며 慎獸, 副慎獸는 苑內의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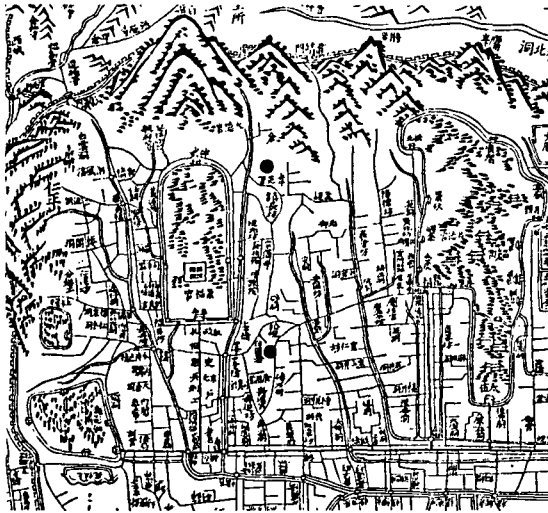
이들 중에 2명은 교대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長番이라함) 근무일수가 1800일이 되면 品階를 올리되 從6품 實職에 이르면 그 職에서 떠나야 하였다. 그리고 掖庭署의 別監이 職을 떠나 移屬되어 온 경우 근무일수 9백일이 차면 正7품으로 올랐고 또 9백일이 차면 그 職에서 떠나야 하였다.<sup>33)</sup>

③ 京衙前 : 京衙前은 품계가 주어지지 않은 下級官吏로서 각 司와 堂上官 이상의 官員에게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던 직인데 掌苑署에는 書吏 4명을 두었다.<sup>34)</sup>

④ 匠人 : 朝鮮時代의 京衙門중 工匠을 보유하고 있는 30개의 官司에 소속된 京工匠의 종류는 129종이며 그 총수는 2,795명이었다.<sup>35)</sup> 이 중에서 掌苑署에는 瓮匠 8명이 소속되었는데<sup>36)</sup> 瓮匠은 독이나 용기를 만드는 匠人이다.

⑤ 奴婢 : 中央의 각 官廳에는 差備奴, 根隨奴 등의 奴婢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差備奴는 각 司나 闕內의 雜役に 종사하는 奴子이며 根隨奴는 官員을 수행하는 奴子이다. 掌苑署에는 差備奴 22명과 根隨奴 4명이 소속되었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經國大典》의 條文에 규정된 바로는 掌苑署에는 正職 5명, 雜職 20명, 京衙前 4명, 匠人 8명, 奴婢 26명 등 약 63명의 구성원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苑圍의 花草, 果物과 禽獸飼育 등에



[圖 1] 掌苑署와 司圃署의 位置 (首善全圖)

註 28) 雜職은 工商에 종사하는 천한 신분이 受職하는 경우 文武兩班과 차별하기 위해 따로 설정한 職制이다. 雜職의 階는 正職과 같이 하였으나 호칭은 달리 정하였다. (韓祐旆 외 4인 (1990 b) : 132. )

註 29) 遞兒職은 正職이 아닌 祿官을 줄일 필요에 의해 각기 필요한 衙門에 수를 제한하여 遞兒라는 이름으로 授職하게 하였다. 祿俸을 감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財政을 절감하고 그들의 신분과 생계를 유지하도록 배려, 제정된 特殊 職名이다. (韓祐旆 외 4인 (1990 b) : 15. ;李載燮 (1967) : 175-218. 참고)

註 30) 『別監二十遞兒...』〈吏典〉雜職 掌苑署 條

註 31) 闕內의 雜役に 동원된 奴子로서, 差備는 특별한 일을 맡기고자 일시적으로 기용할때 쓰는 用語로 '자비'라고 읽는다. (韓祐旆 외 4인 (1990 b) : 735. )

註 32) 韓祐旆 외 4인 (1990 b) : 139-140.

註 33) 『二長番 仕滿一千八百加階, 從六品實職去官. 掖庭署別監去官移屬者 仕滿九百 加正七品階 又滿九百去官.』〈吏典〉雜職 掌苑署 條.

註 34) 〈吏典〉京衙前 掌苑署 條.

註 35) 姜萬吉(1961) “朝鮮前期 工匠考” : 31-32.

註 36) 〈工典〉京工匠 掌苑署 條.

註 37) 〈刑典〉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條.

관한 사무를 전담하였다.

(3) 司圃署

司圃署는 園圃<sup>38)</sup>와 蔬菜에 관한 일을 맡았던 戶曹 所屬 正六品衙門기관이다. 司圃署의 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5] 참조).

司圃署에는 正職으로 提調 1명과 別提 이하 7명을 두었으며 官司의 長은 正6품 司圃이었다. 司圃署 또한 正六品衙門의 조직이기 때문에 提調를 두어 司圃署를 겸직하게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正2품인 戶曹判書가 겸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司圃는 掌苑과 함께 世祖

[表 5] 《經國大典》과 《大典會通》 사이의 造景官制 變化比較

機關	官制	經國大典(1485년)	典錄通考(1706)	續大典(1746)	大典通編(1785)	大典會通(1865년)	變動事項
工	京官職	判書1(正2) 參判1(從2) 參議1(正3) 正郎3(正5) 佐郎3(正6)	左同	左同	左同	判書1(正2) 參判1(從2) 參議1(正3) 正郎3(正5) 佐郎3(正6)	同一
	雜職	工造1(從8) 工作2(從9)	左同	工造, 工作 폐지	降等하여 散料 로함	工造1(從8) 工作2(從9)	降等하여 散料로 함
曹	京衙前	錄事7, 書吏18, 皇隸21		書吏 수 증가	錄事 수 변동	錄事2, 書吏23, 皇隸21	錄事와 書吏의 인원 변동
	奴 婢	差備奴14, 根隨奴17		左同	左同	差備奴14, 根隨奴17	同一
掌	提 調	提調1(正2)	左同	左同	左同	提調1(正2)	同一
	京官職	掌苑1(正6) 別提3(正, 從6)	掌苑:감함 奉事:1명설치	左同	別提:총6품 2명	別提2(從6) 奉事1(從8)	掌苑이 폐지되고 奉 사가 새로 생김
	雜職	別監20 慎花1(從6) 慎果1(從7) 慎禽1(正8) 副慎禽1(從8) 慎獸3(正9) 副慎獸3(從9)	左同	左同	左同	別監20 慎花1(從6) 慎果1(從7) 慎禽1(正8) 副慎禽1(從8) 慎獸3(正9) 副慎獸3(從9)	同一
署	京衙前	書吏4	左同	書員으로 강등	左同	書員4	格을 낮춤
	京工匠	瓮匠8	각각 助役2인씩	左同	용장인원 0명	瓮匠 0	瓮匠을 갖지 않게됨
	奴 婢	差備奴22, 根隨奴4		左同	左同	差備奴 22, 根隨奴 4	同一
司	提 調	提調1(正2)	左同	左同	左同	提調1(正2)	同一
	京官職	司圃1(正6) 別提(正, 從6) 別檢(正, 從8) 합계7	司圃:감함 別檢:감함 直長:1명설치	左同	別提:총6품 2명	別提2(從6) 直長1(從7)	司圃, 別檢 폐지 直長 설치
	京衙前	書吏12	左同	書員 5명으로	左同	書員 6	格을 낮추고 減員
	京工匠	瓮匠10	각각 助役2인씩	左同	용장인원 0명	瓮匠 10	同一
奴 婢	差備奴120, 根隨奴8*		左同	左同*	差備奴120, 根隨奴8*	同一	

\* 司圃署의 根隨奴는 職品을 따라 가감했다. 《經國大典註解》後集 註解下(刑典)

12년(1466) 沈藏庫가 司圃署로 개편될때부터 생긴 직책이다. 司圃署에는 雜職을 두지 않았으며 京衙前으로 書吏 12명을 두었다. 그리고 10명의 瓮匠이 소속되었고 差備奴 120명과 根隨奴 8명이 소속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經國大典》의 조문에 규정된 바로는 司圃署에는 正職 9명, 京衙

前 12명, 匠人 10명, 奴婢 128명 등 약 159명의 구성원이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4. 《經國大典》以後의 造景官制 및 機能

《經國大典》의 편찬이후에도 수정보완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 졌다. 이중 중요한 法典은 《續大



典》, 《大典通編》, 《大典會通》이다. 《大典通編》은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합편이며 《大典會通》은 《大典通編》에다 그후의 法을 선택하여 증보한 것이다. 따라서 《大典會通》에는 《經國大典》의 규정, 《大典通編》중의 《續大典》의 규정 및 《大典通編》 후의 증보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어 高宗時의 法規뿐만 아니라 法規의 改正된 沿革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經國大典》 이후 약 400여년 동안의 造景制度의 變遷을 살펴볼 수 있다.

### (1) 工曹

전체적으로 볼때 工曹의 中央官職은 변함이 없으나 下級官職은 약간의 縮小改編이 이루어졌으며 屬司의 機能에는 변화가 없다. 工曹의 構成은 雜職과 京衙前의 人員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즉 雜職을 《續大典》에서는 폐지하였는데 《大典會通》에서는 散料로 降等하여 부활하였으며, 京衙前의 경우 《續大典》에서 書吏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大典通編》에서는 錄事의 수를 줄였다.

### (2) 掌苑署

掌苑署는 燕山 9년(1503)에 掌苑을 革罷하였다가 中宗 원년(1506)에 다시 두었고<sup>39)</sup> 高宗 19년(1882)에 폐지되었다. 掌苑署의 京苑은 龍山, 漢江 등지에 있었고 外苑은 江華府, 南陽, 開城府, 果川, 高陽, 陽州, 富平 등지에 있었는데 京苑과 江華, 南陽, 開城의 苑圍에는 掌苑署에 소속된 官奴로 苑直을 시켰으며 果川, 高陽, 陽州, 富平에 있는 外苑은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苑直으로 하여 果稅를 수납하게 하였다. 한편 掌苑署는 매년 重陽(9월 9일)에 大闕과 內閣에 국화 화분을 바치기도 하였다.<sup>40)</sup>

掌苑署의 京官職은 《典錄通考》에는 掌苑을 감원하고 奉事1명을 보충하였으며<sup>41)</sup>, 《大典通編》에서는 別提의 품계를 從6品으로 통일하고 2인으로 하였고, 《大典會通》에 이르러서는 別提의 品階를 따라 從6品衙門으로 편성하였다.<sup>42)</sup> 《經國大典》과 비교해 볼때, 掌苑署는 掌苑이 폐지되고 아래의 職級이었던 別提가 掌苑署의 首長이 되면서 한단계 품계가 낮아진 官署가 되었다.

한편 대다수의 雜職이 폐지되었으나 掌苑署의 雜職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京衙前의 書吏는 《續大典》에서 書員으로 降等되었고, 京工匠 역시 《大典通編》에서 부터는 없어졌다. 奴婢의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掌苑署의 別監에게는 해당 職分을 수행함에 있어 遂行 成績에 따른 賞罰이 있었는데 《經國大典續錄》에 의하면 節果(철따라 생산되는 과일)를 먼저 올리는 자에게는 別仕 10일, 우수한 과일을 상납한 자에게는 5일, 희귀한 과일을 상납한 자에게는 각각 2일의 勤務日數를 더하여 주었다. 정월과 4월에 시행하는 都目<sup>43)</sup> 때에는 7월과 10월에 시행하는 都目的 예에 의하여 두 명에게 官職을 제수하였고, 成績이 최하위에 속한 자에게는 5일간의 근무를 삭감하며 直奴는 처벌하고 이를 管掌하는 官員은 附過하였다가 그 成績을 褒貶할때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 上等 果木을 재배한 자는 50점, 上等 花草 40점, 中等 果木 40점, 中等 花草 20점, 下等 果木 10점 및 下等 花草는 5점을 주어 성적을 고려하였다.<sup>44)</sup>

註 38) 『樹果曰園 種菜曰圃.』《經國大典註解》後集 註解上(史典)

註 39) 民族文化推進會(1969)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 150. 한편尹은 《中宗實錄》37年 10月 條의 『... 苑圍司提調...』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燕山君때 掌苑署를 폐지하고 대신 '苑圍司'라는 機構를 두었음지도 모른다고 추정하였다.(尹國炳(1982) : 336)

註 40) 民族文化推進會(1969), 東國輿地備攷,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 226. 柳本藝, 漢京識略 : 155. 참조.

註 41) 法制處 譯註(1974) 典錄通考 : 81.

註 42) 《大典會通》卷1 <史典> 京官職 掌苑署 條.

註 43) 都目은 都目政事를 약칭한 말로써 매년 일정 시기에 中外官吏의 功過를 논하여 그 성적에 따라 陞進, 黜陟시키는 人事行政을 의미한다. 1년에 2차례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兩都目이라고 하며 1년에 네차례 실시하는 경우를 四都目이라고 한다.(韓沽劾의 4인(1990 b) : 59.

註 44) 『掌苑署別監 節果爲先薦新者 給別仕一十 優納者加五 稀貴者亦加二. 正四兩都目 依七十兩都目例 二人除職 居末者削仕五

## (3) 司圃署

司圃署의 위치는 북부 俊秀坊에 있다가 壽進坊으로 옮겼다<sup>45)</sup>([圖 1] 참조). 司圃署의 京官職은 《典錄通考》에서 부터 司圃와 別檢은 減員되고 直長 1명이 보충되었으며, 《大典通編》에서는 別提를 종6품 2명으로 규정하였는데 掌苑署와 마찬가지로 司圃署의 首長인 別提의 품계를 따라 《大典會通》에 이르러는 從六品衙門으로 편성되었다. 京衙前은 《續大典》에서 書吏 12명에서 書員 5명으로 降等 縮小되었다가 다시 《大典會通》에서는 書員 6명으로 되었다. 京工匠 역시 掌苑署와 마찬가지로 《大典通編》부터는 없어졌다. 奴婢의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 (4) 其他

《經國大典》이후의 법전들에서는 芳林苑, 含春苑, 放馬苑, 上林苑 등의 苑圍 이름<sup>46)</sup>과 內農圃 등의 園圍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法條文은 거의 없다. 《漢京識略》에 의하면 內農圃는 內侍들이 채소를 재배하여 供上하던 창덕궁 돈화문 밖의 포전인데<sup>47)</sup> 《經國大典》의 〈吏典〉 內侍部중에는 尙洗, 尙苑 등 內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內侍들의 職名이 등장하지만 이들과 內農圃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 5. 法典에 나타난 造景關聯 條文의 檢討

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造景關聯制度는 工典의 栽植<sup>48)</sup> 條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樹木의

管理에 관한 규정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掌苑署, 司圃署, 工曹의 山澤司와 같은 기관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자세하지 않다. 栽植條는 積極的인 意味에서 造景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實用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性格이 강하다. 栽植條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였다.

## (1) 實用的인 樹木의 管理에 관한 規程

웃나무(漆木), 뽕나무(桑木), 과일나무(果木)의 수량과 다나무밭(楮田), 월골밭(莞田), 살대(箭竹)가 생산되는 곳은 帳簿를 작성하여 本曹와 本道, 本邑에 두고 栽植하여 기르게하고 웃나무, 뽕나무, 果木은 삼년마다 대장을 다시 작성하였다.<sup>49)</sup> 특히 오동나무(桐木)는 각 官司에서 열그루씩 栽植하여 기르고 工曹에서 점검하여 살폈으며,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箭竹)는 해가 지나기를 기다려 베고 또한 땅을 가려서 옮겨 심게하였다.<sup>50)</sup>

濟州 三邑의 감, 굴, 유자나무는 해마다 栽植하거나 접붙이기를 하며 비자나무, 노나무, 산유자나무, 二年木은 부근의 주민을 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연말에 그 숫자를 자세히 적어 보고하였다. 慶尙道와 全羅道 沿海의 여러 고을의 감, 굴, 유자나무는 가을마다 觀察使가 差使員을 정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하였으며, 해마다 어린 소나무를 栽植 또는 종자를 심어서 기르게하고 연말에 심은 숫자를 자세히 적어 보고하게 하였다.<sup>51)</sup>

直奴科罪 所掌官員附過 褒貶時憑考 且上等果木 給劃五十 花草則四十 中等果木 給劃四十 花草則二十 下等果木 給劃一十 花草則五』《經國大典續錄》〈吏典〉除授 條.

註 45) 民族文化推進會(1969) 東國輿地備攷, 卷1,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 226.

註 46) 《大典會通》〈工典〉營繕 條.

註 47) 柳本藝, 漢京識略, 權泰益 譯(1981) : 210.

註 48) '栽植'은 《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用語가 아니며 그 이전부터 사용되던 用語이다.(李崇寧(1987) : 112-114 참조.) 栽植이란 用語는 오늘날 造景學에서 사용하는 '植栽'란 用語와 意味상 같은 개념으로 보이며, 植栽란 用語의 傳統的 表現으로 판단된다.

註 49) 『諸邑漆木桑木果木條數 及楮田莞田箭竹產處 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 栽植培養. 漆木桑木果木 每三年改成績』〈工典〉栽植條.

註 50) 『桐木 各司各十株 栽植培養 本曹監察. 箭竹 須待經年剪取 又擇地移栽』〈工典〉栽植條 註.

註 51) 『濟州 三邑柑, 橘, 柚木 每年栽接. 榿木, 欖木, 山柚子木, 二年木 定榜近人看守 歲抄具數啓聞. 慶尙, 全羅道沿海諸邑 柑, 橘, 柚木 每秋觀察使 定差使員看審 具數啓聞』〈工典〉栽植條 註.

### (2) 蠶室 및 뽕나무의 管理에 관한 規程

동, 서 蠶室 부근의 지역에는 여러 官司로 하여금 해마다 2월 안에 어린 뽕나무를 심게 하거나 혹은 종자를 심게하되 그루수를 계산하여 부근에 사는 주민에게 맡겨 기르게 하였다. 밤섬(栗島)의 여러 官司의 밭을 경작할때는 뽕나무를 다치지 않도록 하며 각 官司 내의 뽕나무는 그루수를 계산하여 帳簿에 기록하여 두고 工曹에서는 잘 검열하되 점검하여 능히 살피지 못한 관리는 죄를 논하였다.<sup>52)</sup>

蠶室都會處에는 뽕나무를 심어 기르고 民家에도 모두 뽕나무를 심게 하되 大戶는 삼백그루, 中戶는 이백그루, 小戶는 일백그루를 심고 首領은 기르는 것을 점검하여 살폈으며 아울러 주인이 없는 야생 뽕나무는 베는 것을 금하였다.<sup>53)</sup>

### (3) 伐木과 採石의 금지

도성 안팎의 산은 標木을 세워 부근 주민에게 分擔시키고 伐木과 採石을 금하며 監役官과 山直을 정하여 간수하였다.<sup>54)</sup> 景福宮과 昌德宮의 主山 및 來脈은 산등성이와 산기슭에서의 耕作을 금하고 外山은 다만 산등성이에서의 耕作만을 금하였으며 地方에도 禁山을 정하여 伐木과 防火를 금하였다.<sup>55)</sup> 工曹과 漢城部の 堂下官은 이를 나누어 맡아 자세히 살피는데 만일 伐木이나 採石한자가 있으면 杖 구십에 처하고, 분담받은 주민과 山直은 杖 팔십에 처하고, 해당관리는 杖 육십에 처하며 나무와 돌은 모두 몰수하며 나무는 採伐者로 하여금 採伐한 그루수 만큼 栽植하게 하였다.<sup>56)</sup>

## V. 結 論

본 고에서는 朝鮮時代 造景을 담당한 機關의 構成, 機能 및 變遷過程을 朝鮮時代의 여러 法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朝鮮時代의 法典은 行政法的인 성격이 강하며<sup>57)</sup>, 새로운 法典의 편찬이 기존 法典을 기준으로 修正 補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制度의 變遷過程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다.

傳統造景의 대상을 ‘傳統庭園’으로 국한하여 ‘傳統庭園의 造營과 管理’라는 관점에서 살펴볼때 工曹의 屬司인 山澤司와 工曹 所屬機關인 掌苑署 및 戶曹 所屬의 司圃署 등이 朝鮮時代 造景을 담당한 中央官制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傳統造景의 中央官制는 《經國大典》 편찬 이전에 이미 마련되었다.

工曹의 屬司인 山澤司는 그 명칭의 변경이 없었으며, 掌苑署는 開國初의 東山色이 太祖 3년(1394)에 上林園으로 바뀌었다가 世祖 12년(1466)년에 掌苑署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司圃署는 開國初의 沈藏庫가 世祖 12년(1466)에 바뀌었다. 山澤司가 소속된 工曹는 1894년 甲午改革까지 존속하였으며 掌苑署와 司圃署는 高宗 19년인 1882년에 폐지되었다.

山澤司는 工曹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構成은 알 수 없으나 中央部處로써 소속 관청인 掌苑署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 掌苑署의 管理 및 監督의 기능을 가진것으로 판단된다. 즉 掌苑署는 實質的이고 機能的인 일을 직접 수행하고 工曹의 山澤司는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註 52) 『東西蠶室傍近地 令諸司 每年二月內栽植桑或下種 計條授傍近居民培養. 栗島諸司田耕治時 勿令侵損桑木. 各司 司內桑木 計條置簿 并本曹擲奸. 不能檢察 官吏論罪』〈工典〉栽植 條 註.

註 53) 『蠶室都會處 種桑培養民戶 并令種桑 大戶三百株 中戶二百株 小戶一百株. 守令檢察培養. 無主野桑 禁斬伐』〈工典〉栽植 條.

註 54) 『都城內外山 立標分授傍近人 禁伐木石 定監役官山直看守』〈工典〉栽植 條 註.

註 55) 『景福宮昌德宮主山及來脈 山脊山麓禁耕 外山則只禁山脊』〈工典〉栽植 條 細註.

註 56) 『本曹漢城付堂下官和會 分掌考察. 如有伐取者 杖九十, 并分受人山直 杖八十, 當該官 杖六十, 木石并沒官. 木則令伐者准條栽植』〈工曹〉栽植 條 註.

註 57) 李熙鳳(1966) “李朝時代に 있어서의 行政과 法律과의 關係”: 21.

掌苑署는 下級機關이기 때문에 中央政府의 高級官吏(提調)가 겸직하여 관리하였는데 掌苑署의 구성은 提調에서 부터 奴婢에 이르기까지 60여명 이상이 소속된 것으로 《經國大典》에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400여년이 지난 《大典會通》에 이르러서는 官司의 서열이 從6品衙門으로 한 계단 강등되었다.

掌苑署는 苑圃를 관리하는 기능을 지녔는데 이때 苑圃라는 개념에는 休息이나 遊樂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實用的인 意味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그 實用性的 목적은 王家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하기 위해서 인데<sup>58)</sup> 掌苑署의 이러한 기능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技能人인 別監(雜職)이 그들이 어떠한 結實을 맺어 進上하느냐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掌苑署에 소속된 果園의 위치가 주로 서울 및 京畿道 일원중 首都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全國의인 성격을 띠는 一般行政은 工曹의 山澤司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것으로 판단된다.

司圃署의 구성원을 掌苑署에 비교해 볼때 雜職은 없으나 正職이 좀더 많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司圃署의 시대적 변화의 樣相은 掌苑署와 유사하여 司圃署의 主宰官인 司圃라는 직책도 폐지되고 官署도 격강되었다.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司圃署는 宮闕의 園圃와 菜田을 維持 管理한다는 實用的인 면이 강한데<sup>59)</sup> 이는 司圃署의 전신인 沈藏庫가 처음에는 工曹에 소속되었다가 이후 戶曹 소속으로 바뀌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工曹소속의 沈藏庫가 어떠한 이유로 戶曹 소속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司圃署의 실용적인 기능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法典에 명시된 活動範圍의 규정만을 근거로하여 판단하면 掌苑

署에서는 花草와 과일 등을 심고 동물을 기르는 형식의 庭園을 관장하였다면 司圃署에는 菜蔬를 심고 가꾸는 형식의 庭園을 관장하였다.

造景關聯制度는 <工典>의 栽植 條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밖의 다른 곳에서는 造景에 관련된 法條文이 보이지 않는다. <工典>의 栽植 條에는 實生活과 밀접한 수목들의 관리, 잠실 및 뽕나무의 관리, 伐木과 採石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朝鮮時代의 法典은 積極的인 意味에서의 造景關聯制度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現代的인 意味에서의 造景에 관련된 규정은 거의 없으며 주로 掌苑署를 중심으로한 機構의 구성과 역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도 주로 花草나 果木의 관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점은 당시의 造景이 花草나 果木의 관리 및 宮闕의 苑圃 管理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보다 實務的인 制度가 있었다 할지라도 法典들이 國家運營의 基本的이고 大義的인 규정만을 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제도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掌苑署, 司圃署 山澤司는 모두 庭園의 造營보다는 庭園의 維持管理 기능을 우선적으로 지니고 있다. 즉 庭園을 設計하여 造營하는 官署가 아니고 庭園의 維持管理 官署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朝鮮時代 造景關聯制度의 고찰은 朝鮮王朝 實錄이나 각종 儀軌 등의 자료를 통하여 設計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法典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內園署, 東山色, 上林園, 掌苑署 등과 같은 高麗 및 朝鮮時代 造景關聯 機關에 관한 研究와 芳林苑, 舍春苑, 放馬苑, 上林園, 內農圃 등과 같은 施設에 관한 연구가 個別的으로 보다 深度 있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註 58) 李朝時代 行政機關은 中央 行政機關에 있어서도 國家機關과 宮內機關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다. (吳世德(1977) : 113.)

註 59) 鄭若鏞의 中央行政 改革論인 《經世遺表》에도 司圃署의 性格과 機能이 國家經濟와 개인의 富의 증대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丁若鏞, 經世遺表 : 382-383.)

## 引用文獻

1. 岡大路 (1938) 中國宮苑園林史考, 常瀛生 譯 (1988) 北京: 農業出版社.
2. 姜萬吉 (1961) “朝鮮前期 工匠考”, 史學研究, 第 12號, 韓國史學會: 1-72.
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譯註(1982) 國譯 大典會通,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4. 金雲泰 (1981) 朝鮮王朝 行政史—近世篇, 서울: 博英社.
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1987) 經國大典註解,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6.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編 (1971) 譯註 高麗史, 第七 (志 三), 釜山: 東亞大學校出版社.
7. 東洋文庫 朝鮮研究委員會 (1977) 經國三典 語彙集覽, 東京: (財)東洋文庫.
8. 民族文化推進會 (1969)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財)民族文化推進會.
9. \_\_\_\_\_ (1977) 國譯 三峰集 II, (財)民族文化推進會.
10. 法制處 譯註 (1974) 典錄通考, 法制資料 第 67輯, 法制處.
11. \_\_\_\_\_ 譯註 (1988) 經國大典, 서울: 一志社.
12. 吳世德 (1977) “朝鮮王朝 官僚體制的 特徵”, 慶熙法學, 第 14卷 第 1號, 慶熙大學法科大學 慶熙法學研究所: 111-131.
13. 俞炳林, 黃琪源, 朴鐘和 (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附設 環境計劃研究所.
14. 劉承源 (1981) “朝鮮初期的 雜職—掌樂院의 雜職”, 震檀學報, 51號, 震檀學會: 89-129.
15. 尹國炳 (1982) 造景史, 서울: 一潮閣.
16. 柳本藝, 漢京識略, 權泰益 譯 (1981) 서울: 探求堂.
17.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8. 李光麟 (1967) “[提調]制度 研究”, 東方學志, 第 8輯,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69-93.
19. 李崇寧 (1987) 韓國의 傳統的 自然觀,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20. 李暉植 (1991) “經國大典을 통한 朝鮮時代 造景關聯制度的 考察”, 密陽專門大學 論文集, 第 25輯: 27-34.
21. 李恩敬 (1991) “朝鮮王朝 法에 관한 考察—經國大典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2. 李載燮 (1967) “朝鮮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西班牙遞兒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第 35, 36合輯: 175-218.
23. 李熙鳳 (1964) “李朝時代의 行政機構의 大綱과 그 特徵—大典會通을 통하여 본”, 法律行政論集, 제 6집, 高麗大學校 行政問題研究所: 1-28.
24. \_\_\_\_\_ (1966) “李朝時代に 있어서의 行政과 法律과의 關係”, 法律行政論集, 제 9집, 高麗大學校 行政問題研究所: 5-34.
25. \_\_\_\_\_ (1970) “韓國法制史”, 韓國文化史大系 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23-218.
26. 張錫權 (1984) “朝鮮王朝法의 特性에 관한 考察”, 社會科學論集, 第 1輯, 檀國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9-27.
27. 田鳳德 (1968) 韓國法制史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28. \_\_\_\_\_ (1989) 經濟六典拾遺, 서울: 아세아 문화사.
29. 丁若鏞, 經世遺表, 金泳鎬 譯 (1991) 한국의 실학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339-450.
30. \_\_\_\_\_, 牧民心書, 茶山研究會 譯註 (1985) 서울: 創作과 批評社.
31. 鄭玉子 (1986) “朝鮮 後期의 技術職 中人”, 震檀學報, 61號, 震檀學會: 45-63.
32.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校訂 經國大典, 朝鮮王朝法典集 1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3. \_\_\_\_\_, 經國大典註解, 朝鮮王朝法典集 1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4. \_\_\_\_\_, 大典續錄, 朝鮮王朝法典集 2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5. \_\_\_\_\_, 大典後續錄, 朝鮮王朝法典集 2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6. \_\_\_\_\_ (1943), 受教輯要, 朝鮮王朝法典集 2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7. \_\_\_\_\_ (1935), 校訂 續大典, 朝鮮王朝法典集 3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8. \_\_\_\_\_, 大典通編, 朝鮮王朝法典集 3 (1972) 서울: 景仁文化社.
39. 中樞院 調査課 編 (1939) 校註 大典會通, 朝鮮總督府 中樞院.
40. 韓洵勳 외 4인 (1990 a) 譯註 經國大典一編 譯 篇,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41. \_\_\_\_\_ (1990 b) 譯註 經國大典一註釋篇,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42. 洪以燮 (1964) “李氏朝鮮 行政研究의 文獻과 資料”, 法律行政論集, 제 6집, 高麗大學校 行政問題研究所: 29-62.
43. 黃琪源 (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韓國造景學會誌, 17(1): 55-68.